

서울특별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,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서구4 김용연 의원입니다.

-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
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
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- 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96호
「서울특별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
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- 금회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
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
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
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.

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,
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
안 제3조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안 제4조 내지 제7조에서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, 점검 및 평가 등을 위한 사항을 규정,
안 제8조 내지 제12조에서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,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,
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에너지절약 시책, 에너지절약, 신 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, 기반구축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
본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